

의안번호	2217530
의 퇴 인	최민희의원
회 답 일	2026. 4. 30.
추계번호	26B1513

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97조의2(한국방송미디어진흥원) 신설	방송미디어 분야 진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방송미디어진흥원(이하 “진흥원”이라 한다)을 설립함(제1항)	재량규정
		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함(제3항) 1. 방송미디어 분야 정책 수립 및 법·제도 개선 등 지원 2. 방송미디어 산업 육성·발전 및 시장 활성화 지원 3. 방송미디어 기업·사업자의 창업·성장 등 지원 4. 방송미디어 분야 전문인력 양성 5. 방송미디어 기술의 융합·활용에 관한 사업 6.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기획·관리·평가 및 성과 확산 등 7. 방송미디어 산업 동향 분석, 통계 작성, 정보 분석 및 서비스 발전 등에 관한 사업 8. 방송미디어 산업 관련 국제교류 협력 및 해외진출의 지원 9.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진흥원의 업무로 정하거나 위탁한 사업 또는 국가기관 등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	의무규정
		정부는 예산 또는 기금의 범위에서 진흥원의 설립, 시설, 운영 및 제3항 각 호의 사업 추진 등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지원할 수 있음(제4항)	재량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97조의2(한국방송미디어진흥원) 신설	•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은 방송미디어 분야 정책 수립, 전문인력 양성, 방송미디어 산업 육성 및 발전 지원 등을 수행하는 한국방송미디어진흥원을 설립하려는 것임
- 참고로, 현재 방송미디어 분야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으로는 시청자미디어재단,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,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,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이 있음

[표 1] 방송미디어 분야 업무 수행 공공기관의 업무 예시¹⁾

개정안에 따른 한국방송미디어진흥원의 업무	「방송법」에 따른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업무	「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업무
- 방송미디어 분야 정책 수립 및 법·제도 개선 등 지원 - 방송미디어 산업 육성·발전 및 시장 활성화 지원 - 방송미디어 기업·사업자의 창업·성장 등 지원 - 방송미디어 분야 전문인력 양성 - 방송미디어 기술의 융합·활용에 관한 사업 -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기획·관리·평가 및 성과 확산 등 - 방송미디어 산업 동향 분석, 통계 작성, 정보 분석 및 서비스 발전 등에 관한 사업 - 방송미디어 산업 관련 국제교류 협력 및 해외진출의 지원 -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진흥원의 업무로 정하거나 위탁한 사업 또는 국가기관 등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	- 미디어에 관한 교육·체험 및 홍보 - 시청자 제작 방송프로그램의 지원 - 각종 방송제작 설비의 이용 지원 - 그 밖에 시청자의 방송참여 및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-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서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업무로 규정하거나 위탁한 사업 -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	- 방송광고의 판매대행 -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와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 방송광고 균형발전을 위한 지원 사업 - 방송광고제작산업 육성, 광고표준화, 광고효과 측정, 광고유통 기반 구축·운영, 광고 관련 조사·연구·교육, 공익광고 등 방송통신광고산업 진흥 관련 사업 - 시청점유율 조사·검증·산정 관련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위탁하는 업무 - 그 밖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방송광고산업 육성을 위하여 위탁하는 업무 -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

1) 해당 기관의 2025년 수입 예산 현황(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, 정부지원금은 기관운영·사업 출연금 모두 포함)
 - 시청자미디어재단: 513억원(정부지원금 460억원),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: 1,434억원(정부지원금 1,363억원),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: 952억원(정부지원금 800억원), 한국인터넷진흥원: 3,378억원(정부지원금 2,984억원)

「전파법」에 따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업무	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업무
- 방송·통신·전파 관련 국내외 기술에 관한 정보의 수집·조사 및 분석 - 방송·통신·전파에 관한 연구지원 및 교육 등	- 정보통신망의 이용 및 보호, 방송통신과 관련한 국제협력·국외진출 등을 위한 법·정책 및 제도의 조사·연구 - 정보통신망의 이용 및 보호와 관련한 통계의 조사·분석 - 정보통신망의 이용에 따른 역기능 분석 및 대책 연구 - 정보통신망의 이용 및 보호를 위한 홍보 및 교육·훈련 - 방송통신과 관련한 국제협력·국외진출 및 국외홍보 지원 등

- 개정안에 따른 재정소요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한국방송미디어진흥원의 조직 규모 및 설립 방식, 방송미디어 분야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 등과의 역할 및 업무 재편 여부, 수행 사업의 내용 및 규모 등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나, 이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으므로, 현 시점에서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음

Ⅲ. 부대의견

☐ 없음

Ⅳ. 작성자

☐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최동완	예승우

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최동완	02-6788-3746	dongwaniii@nabo.go.kr